

[별표 1의3]

■ 신용정보업감독규정 [별표 1의3]

정보전송요청을 통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에 전송 가능한 신용정보의

범위(영 제28조의3제6항제2호 및 제23조의4제2항 관련)

1. 법 제2조제9호의2가목에 따른 신용정보

가. 계좌 정보

1) 계좌자산 정보

계좌종류, 현재잔액, 통화코드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

나. 대출 정보

1) 일반 대출현황 정보

대출종류, 대출잔액, 통화코드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

2) 카드 대출현황 정보

단기대출 이용금액, 장기대출 잔액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

3) 금융투자 대출현황 정보

대출종류, 대출잔액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

2. 법 제2조제9호의2다목에 따른 신용정보

가. 금융투자상품 정보

1) 상품 기본 정보

상품종류, 계좌번호, 평가금액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

2) 상품 자산 정보

매입금액, 통화코드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

3. 법 제2조제9호의2라목에 따른 신용정보

가. 증권계좌 정보

1) 계좌 및 계좌자산 정보

계좌종류, 평가금액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

나. 연금상품 정보

1) 상품 정보

연금종류, 상품명, 가입일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

4. 법 제2조제9호의2마목에 따른 신용정보

가. 보험대출 정보

1) 보험대출 현황 정보

대출형태, 대출잔액,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

2) 대출 상환내역

상환일, 회차별 원금상환금액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

나. 영 제2조제6항에 따른 거래 관련 정보

대출종류, 대출잔액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